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에 가정방문, 전화상담 추가〉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96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에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u>출석</u>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 ----- ----- ----- ----- -----가정방문, 전화상담, 출석-----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u>제17조</u> ,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	③ ----- ----- -----제11조, 제17조----- ----- ----- ----- -----

현행	개정안
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 -----.

2. 검토의견

- 현행법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해당 조사 시 가정방문, 전화상담의 방법도 추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이하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가정방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¹⁾

- 가정방문, 전화상담 사례조사의 방법을 추가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보다 적극적

1)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의 조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 등이 준용되므로(동 규정 제3항), 행정조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경우 불응 시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 조사를 위한 출석 등 요구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 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 법원 행정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1
